



제 438회 국회 (임 시 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생활물류서비스 확충 사업 포함 >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349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생활물류서비스 확충 사업 포함	2
IV . 입법의 재정영향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임종득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 2026. 6. 19.
3. 회 부 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의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생활기반과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고,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심화로 우편·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어 주민이 생필품, 의약품, 농자재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적시에 공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민간 물류체계만으로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역할 확대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범주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 확충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카목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생활물류서비스 확충 사업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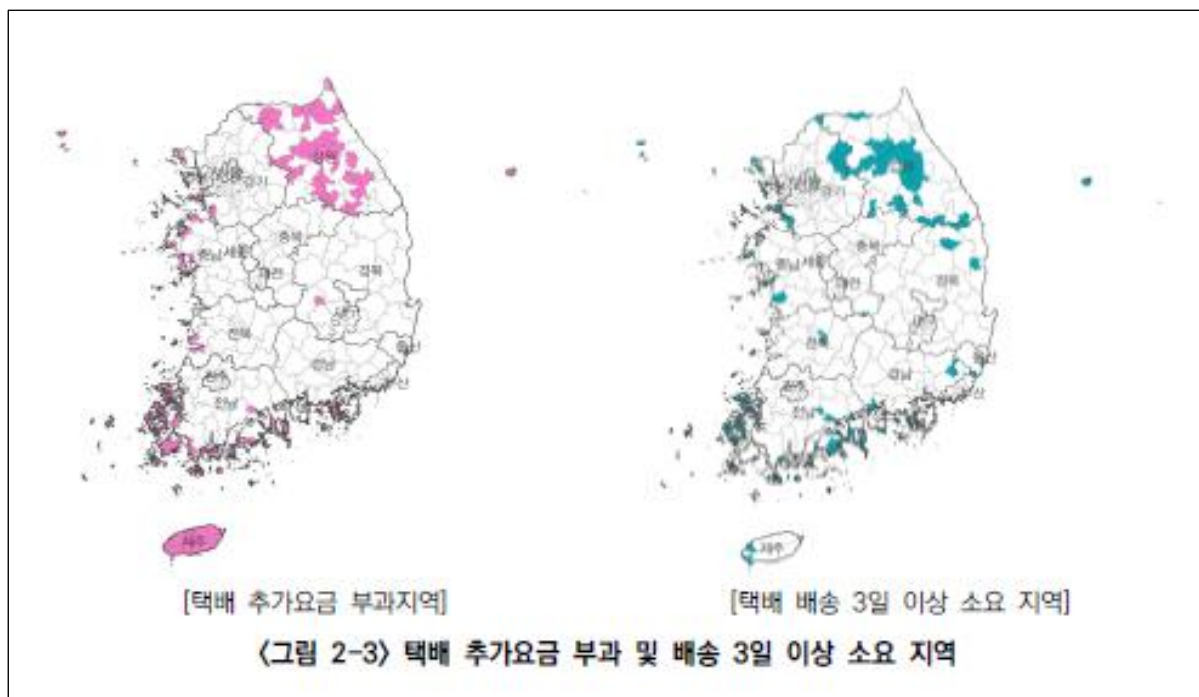
개정안은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생활물류서비스(공동화 및 정보화를 포함한다) 확충 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10. ----- ----- ----- ----- ----- -----.
가. ~ 차. (생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u><신설></u>	<u>카.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정</u> <u>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물</u> <u>류서비스(공동화 및 정보화</u> <u>를 포함한다) 확충 사업</u>
카. (생략)	타. (현행 카목과 같음)
11. ~ 18. (생략)	11. ~ 18.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생활물류서비스”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 등으로 정의되고 있음.¹⁾

지난 2024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한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주요 택배사들이 도서·산간 등 일부 지역에 평균 4,463원의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3일 이상 배송이 지연되는 지역도 시·군·구 기준 43개, 읍·면·동 기준 130개에 달하는 등 지역 간 물류서비스의 격차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택배 추가요금 부과 및 배송 3일 이상 소요 지역】



※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개선방안 연구」(한국교통연구원, 2024)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물류서비스”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에 관한 활동으로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 및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안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의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는 사업인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생활물류서비스 확충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수립·시행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생활물류서비스를 확충하도록 하여 농어촌 주민의 생활 편의를 향상하고 도시와 농촌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56개 시·군·구)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또한, 같은 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산어촌에서 지역 간 생활물류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물류시설의 건설·보수·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0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9조(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시설의 건설·보수·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생활물류시설의 원활한 개발·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통신·전기시설·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 사업

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장추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및 농산어촌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지역 간 생활물류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이를 감안하면, 개정안의 농어촌 등의 열악한 생활물류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농어촌에 대해 생활물류서비스 확충에 대한 사항을 특별히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농어촌의 열악한 생활물류서비스 개선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이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농어촌지역 생활물류서비스 확충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비사업 중심인 「농어촌정비법」보다는, 농어촌의 공공서비스 및 생활여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도서·산간 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가 열악한 주요 원인은 택배물량이 적은 반면, 배송지 간의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 배송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경제성이 낮은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⁴⁾

이를 감안하면, 농어촌에 생활물류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집하장 등의 시설을 확충하는 물리적인 공간정비사업보다는, 민간사업자가 집화·배송 등의 서비스를 농어민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수준까지 국가 등이 보조·지원하거나, 이를 국가 등이 직접 서비스하는 등의 수단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국토교통부, 2023.12)

그런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생활환경을 정비·확충하는 사업으로서 물리적 공간과 시설의 정비·개발에 중점이 있으므로, 서비스의 제공 자체에 해당하는 생활물류서비스를 포함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농어촌의 공공서비스 및 생활여건에 관한 사항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⁵⁾에 근거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통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를 감안하면, 농어촌에 생활물류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리적·공간적 정비사업인 “생활환경정비사업”에 그 내용을 포함하기보다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문화예술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1.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항
- 2의2.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안정화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의 교육·문화예술 및 생활체육(「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4의2. 농어촌의 의료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6.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확대에 관한 사항
8.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필요한 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한편, 개정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개정안의 취지와 당위성은 공감하나 내용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과 중복되며 농어촌지역의 서비스 분야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IV. 입법의 재정영향

한편, 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⁶⁾

문 의 처
02)6788-5417

6)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29)